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9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4.

발의자 : 임오경 · 임광현 · 김남희

박정 · 문대림 · 위성곤

윤준병 · 신영대 · 임미애

강유정 · 한민수 · 서영교

장철민 · 박홍근 · 김용만

윤후덕 · 문정복 · 이병진

한정애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 등이 농협조합에 3천만원 이하 자금을 예탁하여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, 동 제도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.

급격한 산업화 · 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이주, 이농 등으로 2011년에는 농가인구가 300만명이었지만, 2023년에는 2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농촌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. 실제로 농가 고령화율은 2011년 33.7%에서 2023년 52.6%로 크게 상승함.

이에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금융소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

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(안 제89조의3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